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58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7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확대 원칙에 따라 작업시간을 합리적으로
조정하여,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청소
행정을 구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미화원 근로시간(시업과 종업시간) 일부 개정(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)
- 새벽근무 시간을 주간근무 시간대로 변경하고 청소작업별 근무
시간을 세분화
 -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하고
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 : 청소행정과장, 전화 : 3396-5482, 팩스 : 3396-8754, email : (jaeh unyu@junggu.seoul.kr, 주소 :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(5층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
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이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
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가로환경미화원, 동배치환경미화원, 재활용품·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(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, 휴게시간 등)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재활용처리장환경미화원 등 그 밖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한다.

1. 시업과 종업시각(월~금)

- 가. 가로청소작업 : 06:00 ~ 15:00
- 나. 동주민센터 관할지역 청소작업 : 07:00 ~ 16:00
- 다. 재활용품·대형생활폐기물 수거작업 : 07:00 ~ 16:00
- 라. 재활용처리장 압축작업 등 :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

2. 휴게시간 :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·미세먼지 주의보(경보) 발령·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안전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</p> <p>제27조(시업과 종업시각, 휴게시간) ① 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, 휴게시간 등 가로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밖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따로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업시간 : 05:30 2. 종업시간 : 14:30 3. 휴게시간 :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한다.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·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 ④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</p> <p>제27조(시업과 종업시각, 휴게시간) ① 가로환경미화원, 동배치환경미화원, 재활용품·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(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, 휴게시간 등)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재활용처리장 환경미화원 등 그 밖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. 다만,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업과 종업시각(월~금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가로청소작업 : 06:00~15:00 나. 동주민센터 관할지역 청소작업 : 07:00~16:00 다. 재활용품·대형생활폐기물 수거작업 : 07:00~16:00 라. 재활용처리장 압축작업 등 :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 2. 휴게시간 :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·미세먼지 주의보(경보) 발령·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